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21

대 전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구합2415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
원 고	A
피 고	대전광역시 서구청장
변 론 종 결	2016. 6. 1.
판 결 선 고	2016. 8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5. 6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B 차량에 관한 2015년도 1기분 자동차세 250,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21

가. 원고는 2012. 3. 14. B SM7 승용차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.

나. 피고는 2015. 6. 10.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5년도 1기분 자동차세 192,390원, 지방교육세 57,710원 합계 250,100원을 부과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. 6. 29.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위 청구는 2015. 9. 18.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대부중개업자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금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. C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후,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원고에게 265만 원을 교부하였고, 이 사건 차량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다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아 이 사건 차량을 갖고 도주하였다. 이와 같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21

의 조세이고, 지방세법 제125조,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며,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(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9704 판결,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도3278 판결 참조).

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,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닌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고,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방승만

판사 김민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21

판사 윤민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21

(별지)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125조(납세의무자)

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.

제150조(납세의무자)

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재산세(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)의 납세의무자

■ 자동차관리법

제6조(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)

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 끝.